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나388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나388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09186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권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김강준

변론 종결 2024. 2. 27.

판결 선고 2024. 4.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09186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D의 피고에 대한 2017. 6. 10.자 40,000,000원, 2017. 6. 12.자 30,000,000원의 각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3,021,929원, 원고 B에게 26,978,0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H(제1심공동피고이었으나 제1심법원의 2023. 6. 5.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이하 피고와 H를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3663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의 준비서면과 2020. 10. 20. 선고된 판결문을 통해 적어도 2020. 10. 20. 무렵에는 '피고가 D으로부터 2017. 6. 10. 4,000만 원을, 2017. 6. 12. 3,0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7. 7. 21. 피고 등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피고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A은 2017. 9. 1.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관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M(제1심 공동피고이었으나 제1심법원의 2023. 6. 5.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과 H는 같은 달 27. 위 원고를 상대로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5227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6.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9. 10. 21.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844호)에서 'M과 H(위 소송에서는 원고들)가 먼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그 직후 D이 잠적하자, 원고 A(위 소송에서는 피고)은 기존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2017. 9.경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후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0. 23. 위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2018. 1. 5.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0916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31.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255호)에서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다(위 법원 2018머16729호). 그런데 원고 A은 201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02920호로 '위 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1) 근저당권자인 피고 등이 가지는 배당금지급채권이 위 법원 2018가합500916호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해 D에게 양도됨으로써 D이 가지게 되는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같은 달 21. 서울고등법원에 위 조정의 불성립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25. 위 신청에 기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2019. 11. 14.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하였고, 원고 A은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3663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 등은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존재를 알았을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20. 10. 20.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피보전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으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배당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배당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2017. 6. 10. 4,000만 원을, 2017. 6. 12. 3,000만 원을 각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법원도 판결에서 '피고 측이 2014년경 D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D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그 운영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2017. 6. 10. 및 같은 달 12.에 D으로부터 위 투자금 중 7,0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설시를 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2020. 10. 22.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등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22. 10. 14.).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D으로부터 2017. 6. 10. 4,000만 원을, 2017. 6. 12. 3,000만 원을 각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피고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때(판결 선고전임이 분명하다)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관련 소송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때인 2020. 10. 22.에는 'D이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여러 차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청구와 주장 및 판단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D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가 2022. 4.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복규

판사오연정

판사안승호

별지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서울중앙법원 P) 개시후, 피고 등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아 신청한 임의경매이다.